

사기·사기방조

[수원지방법원 2008. 5. 6. 2006노3300]



【전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선희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호영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6고단27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1항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등 이 사건 환자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환자들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심사평가원의 의료분석결과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다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진료기록을 반영하지 않은 등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입원을 하더라도 통원치료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입원결정 및 치료를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는 입원진료 내역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 4. 27. 재심요양급여비 중 피고인이 재심의를 청구한 63,512,610원 중 38,696,960원에 대해서만 환수통보를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환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24,815,650원은 정당한 진료의 대가이므로 편취로 인한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심 범죄사실 2항 사기방조죄 부분에 대하여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도 일시장소 방법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해당 기간 동안 2만 여명의 환자를 입원시킨 바 있는데 특별히 이 사건 환자들의 보험 가입상황이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보험사기에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 진단서는 보험금지급에 참고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의사는 환자가 원할 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따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환자에 대해 며칠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일 또는 5일의 입원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3일 등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의 입원치료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치료비 전체가 편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3) 원심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금액이나 청구경위에 비춰 봐도 과잉청구된 부분은 직원들의 착오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이 사건 가짜 환자들에게 속아 과잉진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시에서 제출된 검찰서기 공소외 2 작성의 2008. 4. 28.자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인해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7.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결 파기 이후 부분에서 설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1항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등 이 사건 환자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환자들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심사평가원의 의료분석결과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다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진료기록을 반영하지 않은 등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입원을 하더라도 통원치료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입원결정 및 치료를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는 입원진료 내역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 4. 27. 재심요양급여비 중 피고인이 재심의를 청구한 63,512,610원 중 38,696,960원에 대해서만 환수통보를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환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24,815,650원은 정당한 진료의 대가이므로 편취로 인한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심 범죄사실 2항 사기방조죄 부분에 대하여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도 일시장소 방법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해당 기간 동안 2만 여명의 환자를 입원시킨 바 있는데 특별히 이 사건 환자들의 보험 가입상황이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보험사기에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 진단서는 보험금지급에 참고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의사는 환자가 원할 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따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환자에 대해 며칠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일 또는 5일의 입원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3일 등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의 입원치료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치료비 전체가 편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3) 원심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금액이나 청구경위에 비춰 봐도 과잉청구된 부분은 직원들의 착오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이 사건 가짜 환자들에게 속아 과잉진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시에서 제출된 검찰서기 공소외 2 작성의 2008. 4. 28.자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인해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7.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결 파기 이후 부분에서 설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1항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등 이 사건 환자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환자들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심사평가원의 의료분석결과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다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진료기록을 반영하지 않은 등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입원을 하더라도 통원치료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입원결정 및 치료를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는 입원진료 내역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 4. 27. 재심요양급여비 중 피고인이 재심의를 청구한 63,512,610원 중 38,696,960원에 대해서만 환수통보를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환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24,815,650원은 정당한 진료의 대가이므로 편취로 인한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심 범죄사실 2항 사기방조죄 부분에 대하여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도 일시장소 방법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해당 기간 동안 2만 여명의 환자를 입원시킨 바 있는데 특별히 이 사건 환자들의 보험 가입상황이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보험사기에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 진단서는 보험금지급에 참고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의사는 환자가 원할 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따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환자에 대해 며칠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일 또는 5일의 입원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3일 등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의 입원치료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치료비 전체가 편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3) 원심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금액이나 청구경위에 비춰 봐도 과잉청구된 부분은 직원들의 착오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이 사건 가짜 환자들에게 속아 과잉진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시에서 제출된 검찰서기 공소외 2 작성의 2008. 4. 28.자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인해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7.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결 파기 이후 부분에서 설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1항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등 이 사건 환자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환자들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심사평가원의 의료분석결과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다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진료기록을 반영하지 않은 등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입원을 하더라도 통원치료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입원결정 및 치료를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는 입원진료 내역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 4. 27. 재심요양급여비 중 피고인이 재심의를 청구한 63,512,610원 중 38,696,960원에 대해서만 환수통보를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환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24,815,650원은 정당한 진료의 대가이므로 편취로 인한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심 범죄사실 2항 사기방조죄 부분에 대하여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도 일시장소 방법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해당 기간 동안 2만 여명의 환자를 입원시킨 바 있는데 특별히 이 사건 환자들의 보험 가입상황이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보험사기에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 진단서는 보험금지급에 참고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의사는 환자가 원할 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따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환자에 대해 며칠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일 또는 5일의 입원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3일 등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의 입원치료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치료비 전체가 편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3) 원심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금액이나 청구경위에 비춰 봐도 과잉청구된 부분은 직원들의 착오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이 사건 가짜 환자들에게 속아 과잉진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시에서 제출된 검찰서기 공소외 2 작성의 2008. 4. 28.자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인해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7.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결 파기 이후 부분에서 설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1항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등 이 사건 환자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환자들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심사평가원의 의료분석결과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다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진료기록을 반영하지 않은 등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입원을 하더라도 통원치료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입원결정 및 치료를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는 입원진료 내역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 4. 27. 재심요양급여비 중 피고인이 재심의를 청구한 63,512,610원 중 38,696,960원에 대해서만 환수통보를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환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24,815,650원은 정당한 진료의 대가이므로 편취로 인한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심 범죄사실 2항 사기방조죄 부분에 대하여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도 일시장소 방법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해당 기간 동안 2만 여명의 환자를 입원시킨 바 있는데 특별히 이 사건 환자들의 보험 가입상황이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보험사기에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 진단서는 보험금지급에 참고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의사는 환자가 원할 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따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환자에 대해 며칠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일 또는 5일의 입원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3일 등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의 입원치료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치료비 전체가 편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3) 원심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금액이나 청구경위에 비춰 봐도 과잉청구된 부분은 직원들의 착오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이 사건 가짜 환자들에게 속아 과잉진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시에서 제출된 검찰서기 공소외 2 작성의 2008. 4. 28.자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인해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7.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결 파기 이후 부분에서 설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1항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등 이 사건 환자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환자들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심사평가원의 의료분석결과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다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진료기록을 반영하지 않은 등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입원을 하더라도 통원치료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입원결정 및 치료를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는 입원진료 내역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 4. 27. 재심요양급여비 중 피고인이 재심의를 청구한 63,512,610원 중 38,696,960원에 대해서만 환수통보를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환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24,815,650원은 정당한 진료의 대가이므로 편취로 인한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심 범죄사실 2항 사기방조죄 부분에 대하여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도 일시장소 방법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해당 기간 동안 2만 여명의 환자를 입원시킨 바 있는데 특별히 이 사건 환자들의 보험 가입상황이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보험사기에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 진단서는 보험금지급에 참고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의사는 환자가 원할 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따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환자에 대해 며칠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일 또는 5일의 입원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3일 등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의 입원치료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치료비 전체가 편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3) 원심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금액이나 청구경위에 비춰 봐도 과잉청구된 부분은 직원들의 착오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이 사건 가짜 환자들에게 속아 과잉진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검찰서기 공소외 2 작성의 2008. 4. 28.자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인해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7.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결 파기 이후 부분에서 설시한다).